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5. 18 선고 2019가합115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건아

피 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이학선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5.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9. 5. 31. 접수 제659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C과 사이에 ① 2016. 4. 19. 여신과목 농식품 기업운전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은 1억 5,000만 원, 만기일은 2017. 4. 19.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1억 5,000만 원을, ② 2016. 4. 20. 여신과목 농식품 기업운전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은 1억 원, 만기일은 2017. 4. 20.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1억 원을, ③ 2016. 10. 20. 여신과목 농식품 기업운전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은 10억 원, 만기일은 2019. 10. 11.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10억 원을 각 C에게 대출하여 주었고, C은 위 각 대출금의 여신기간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9. 4. 20.부터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 2) C은 원고의 D카드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기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19. 5. 21.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 3) 2019. 5. 31.을 기준으로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 및 신용카드 원리금 채권액은 1,234,799,705원이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및 근저당권설정

- 1) C은 피고와 사이에 ① 2018. 6. 15. 피고가 농가를 통해 계약재배하는 양파를 C이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파계약재배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기초하여, ② 2018. 10. 8. C이 피고 소유의 양파를 C의 저온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2019. 3.까지 매월 일정량을 출고하여 판매 후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에게 양파대금을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파보관계약 및 양파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양파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양파 11,740망(20kg/망), 1억 1,0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 2) 그러나 C은 피고에게 예정된 변제기일에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2019. 1. 25. 피고에게 '2015. 2. 15.부터 2015. 4. 30.까지 3회에 걸쳐 74,315,954원을 분할 지급하겠다는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C이 위 변제계획서에 따른 변제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C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C은 2019. 5.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9. 5. 31. 접수 제6594호로 채권최고액을 9,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무자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반면, 원고의 채무 외에도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C으로부터 양파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에게 다른 채무가 존재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6조 제1항). 위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나. 판단

1)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C이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증인 E의 증언과 이 법원의 F단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실제로 C에 대하여 양파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은 양파 값이 폭락한데다 양파를 보관하던 저온창고의 온도제어장치 고장으로 양파가 썩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고에게 제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② 피고는 2018. 6. 15. C과 양파계약재배 계약을 체결하면서 C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C과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피고나 그 담당직원이 C의 자산상태나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C의 채권자들에 의해 유효한 가압류, 압류등기 등이 마쳐져 있지 않았고, 말소된 가압류등기와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마쳐져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C의 자산상태의 악화나 그 처분행위의 사해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조회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중앙회인 원고를 통해서만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체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C으로부터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징구하였다거나 원고를 통해 C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은 없는 점, ⑤ 또한 피고가 C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계약하는 것뿐이어서, 피고에게 C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은 점, ⑥ 피고가 금융기관으로서 부실채권을 방지하고 채무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확보할 여러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당연히 취해야 할 정상적인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C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향, 판사 박상훈, 판사 신호승

별지

목 록

1. 전남 함평군 공장용지 1021㎡
2. 공장용지 139㎡
3. 공장용지 588㎡
4. 공장용지 942㎡
5. 공장용지 412㎡
6. 전남 함평군 , , , , [도로명주소]
 전남 함평군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공장 1656.43㎡. 끝.

